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발의자 : 이종욱 · 송언석 · 이달희
신동욱 · 박덕흠 · 최은석
안철수 · 이종배 · 배준영
조승환 · 이양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·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,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경찰력

낭비 및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
제18조제1항).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과태료)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·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<u>500만원</u>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18조(과태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1천만원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